

case  
9

## 화분 받침용 이동대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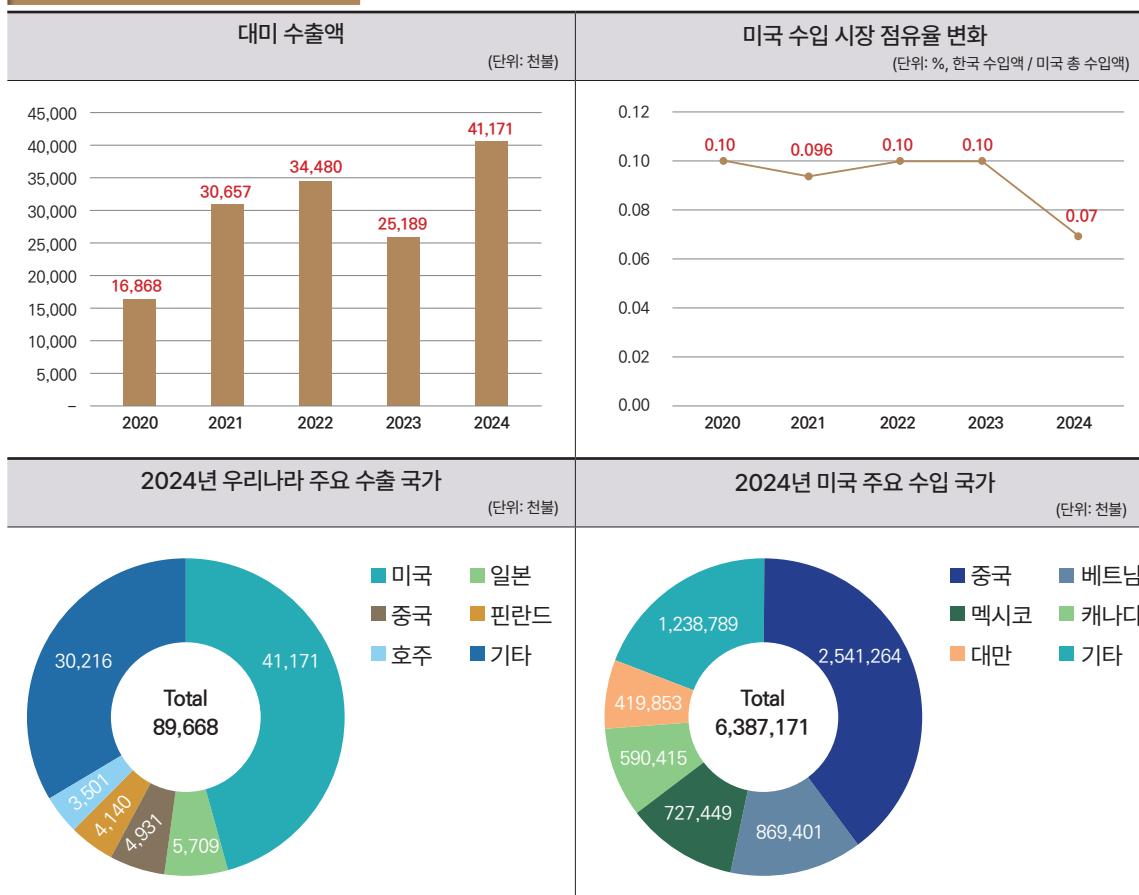
사례명	화분 받침용 이동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2353 (2024.09.11.)
사실관계	중국산 원형 상판, 캐스터, 사각 강철 튜브 등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도금,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인 화분 받침용 이동대를 생산한 뒤,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산 원형 상판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캄보디아로 수입될 당시부터 최종 제품에 전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음</li><li>캄보디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전체 제품 원가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므로 중국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정도의 공정이 수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li></ul>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9403.2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9403.2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화분 받침용 이동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2353 (2024.09.11.)

#### 사실관계

요청자 Mullally International Inc.

제품명	화분 받침용 이동대(Planter dolly) (모델번호: 1807149)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상판(중국산)</li> <li>사각 강철 투브 룰(중국 혹은 베트남산)</li> <li>4개의 회전 캐스터(중국산)</li> <li>너트 4개(중국산)</li> </ul>
용도	화분을 옮겨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정용 이동형 받침대
완제품 HTSUS	9403.20.0050

####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중국 및 베트남산 자재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 제조공정
  - 사각 강철 투브를 링 형태로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드릴 작업 수행
  - 원형 상판 연마 및 샌딩
  - 상판과 링 용접
  - 너트 4개를 상판에 용접
  - 슬래그 및 거친 모서리 연마
  - 화학 세척, 음극 전기 도금 및 분체도장 처리
  - 캐스터를 용접된 너트에 부착
3.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정**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특성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 CBP는 Uniroyal(1983) 사례를 인용하여 중국산 부품이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신발 갑피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함

- 중국산 원형 상판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캄보디아로 수입될 당시부터 최종 제품에 전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더불어 중국산 캐스터는 자재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최종 제품의 주요 기능인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바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판을 들어 올리는 부가적 기능도 수행함

- 캄보디아에서 제조되는 유일한 부품인 강철 링은 제품에 강성을 부여하지만 외관상 보이지 않으며,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도 단순하여 전문화된 장비나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부품임

- 또한 너트 용접, 금속 마감 작업 등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전체 공정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전체 제품 원가의 약 4분의 1정도만을 차지하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법령 및 분석

###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번인 9903.88.03도 함께 신고해야함

## 결론

- ✓ 중국산 원형 상판, 캐스터 등은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화분 밭침용 이동대의 원산지는 중국임

## ③ 시사점

-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에 전용될 목적으로 상당 부분 가공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2353 (2024.09.11.), <https://rulings.cbp.gov/ruling/N342353>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